회장 선거관리 규정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0. 01. 15

2020. 02.12.체육회승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협회”라 한다) 규약 제20조에 따라 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협회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9조에 따른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25조 내지 제38조, 제4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협회 규약 제22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3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4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선거업무를 위하여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1일 8만원 범위내의 일비를 지급한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시체육회 게시판(또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협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협회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2 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9세 이상
2. 선거인이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4. 선거인이 제6조 제1항 제5호의 사람인 경우, 협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 .군 협회(정회원)는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람이 구, 군협회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협회 규약 제20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회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의원
2. 협회 규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의원
3. 지도자
4.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5. 심판

② 선거권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선거일 전 35일까지 구.군 협회에 제8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각 후

보자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협회 규약 제8조 제1항 따른 대의원
2. 협회 규약 제8조 제2항 따른 대의원
3. 구.군협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구.군협회의 부회장 1명

4. 연맹, 연합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연맹, 연합회의 부회장 1명

5. 지도자 2명
6. 심판 2명
7. 선수 2명 (전국체전 3년이 내 출전자)

② 구.군협회의 임원은 제1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군 협회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 군 협회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구.군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구.군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군 협회의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 군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구. 군 협회(정회원)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1,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25일까지 협회 또는 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 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종목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3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협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4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6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27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협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 1(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협회 임.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32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3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당선인 결정

제35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거나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찬반투표를 실시 할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6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시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7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협회 또는 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

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제7장 보 칙

제4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4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2조(그 외의 사항) ① 협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3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협회는 시체육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규정 제.개정)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2020. 0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군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중구 축구협회 등)
2. 직군은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 등의 구분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2항의 서류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태권도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태권도협회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절----------취----------선----------

접 수 증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번 호 :
- 사 퇴 사 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투표용지

연번

제○○대 태권도협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보자 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본 인 승 낙 서

1. 소　　속:
2. 직 위(직 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관리규정」제31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개표결과 보고서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태권도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태권도협회 선거 관련 선거인(후보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2. 가족관계 3. 징계사실 4. 임원결격사유 5. 사직 퇴임여부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울산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선거인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태권도협회 선거관련 후보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울산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 4년 보관**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울산체육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4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